

금촌 도시재생뉴딜 골목정원 조성 CCTV설치 행정예고

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CCTV를 설치하는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

2026년 7월 22일

파 주 시 장

1. 행정예고의 내용

- 금촌 도시재생뉴딜 골목정원 조성 CCTV설치에 따른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

2. 관련근거

-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)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3. 설치목적 : 보행객들의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및 유사시 신속한 조치

4. 설치장소 : 붙임2 참고

5. 예고기간 : 2026. 7. 22. ~ 2026. 8. 10.(20일간)

6. 공고방법: 파주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

7. 의견제출

- 제출기한 : 2026년 8월 10일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인터넷 등
- 제출서식 : 붙임1 참고
- 제출내용 :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주소,생년월일,전화번호,의견내용
- 제출 및 문의처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47 중앙빌딩5층 균형개발과

도시재생팀(☎ 031-940-5721, fax 031-940-4639)

【붙임 1】

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		
1. 사업명	금촌 도시재생뉴딜 골목정원 조성 CCTV 설치	
2. 의견제출자	성명	
	주소	
	전화번호	휴대폰 : ☎ 연락처 :
3. 의견 (찬·반 여부 및 사유)	※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제출가능 ※ 증거자료 첨부 가능	
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 파주시장 귀하		

【붙임 2】

금촌 도시재생뉴딜 골목정원 조성 CCTV 설치 장소



연번	설치 목적	설치 수량		대상지	비고
		회전	고정		
1	모니터 및 방법용	1	2	금정로	길옆